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
| **정밀사료 보충재****증치세 면제에 대한****국가세무총국의 공고**국가세무총국 공고 2013년 제46호정밀사료 보충재 증치세 관련 문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한다.정밀사료 보충재가 <사료제품 증치세 면제에 대한 재정부, 국가세무총국의 통지>(재세 [2001] 121호), 이하 통지라 함) 문건 중에서 지칭한 “배합사료” 범주에 속하는 경우 당해 통지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증치세를 면제할 수 있다.  정밀사료 보충재라 함은 초식동물의 영양을 보충하기 위해 여러가지 사료와 사료첨가제를 일정한 비율로 배합한 사료를 가리킨다.  이 공고는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 이 전에 이미 발생하고 또 처리된 사항은 조정을 하지 아니하며, 처리를 하지 아니한 경우 이 공고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.    국가세무총국  2013년 8월 7일 |  | **国家税务总局****关于精料补充料免征增值税问题的公告**国家税务总局公告2013年第46号　　现将精料补充料增值税有关问题公告如下：　　精料补充料属于《财政部 国家税务总局关于饲料产品免征增值税问题的通知》（财税〔2001〕121号，以下简称“通知”）文件中“配合饲料”范畴，可按照该通知及相关规定免征增值税。　　精料补充料是指为补充草食动物的营养，将多种饲料和饲料添加剂按照一定比例配制的饲料。　　本公告自2013年9月1日起执行。此前已发生并处理的事项，不再做调整；未处理的，按本公告规定执行。　　国家税务总局　　2013年8月7日 |